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0. 26.  
북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10. 20. 권영숙 의원 외 5명
- 나. 회부일자 : 2020. 10. 20.
- 다. 상정일자 :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0. 10. 26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권영숙 의원

### 가. 제안이유

마포구 관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포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 
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2)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
- 3)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
- 4)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)

5)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교육 및 매뉴얼을 작성·배포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10조)

6) 불법촬영 점검기기 등 대여 근거를 정함(안 제12조)

### 3. 검토보고 (조광현 전문위원)

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르면 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·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” 하도록 정하고 있고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제1항에서는 “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”라고 정하고 있음.
- 본 조례안은 최근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들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증가되고 있어 마포구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주요내용으로는,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, 안 제5조에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, 안 제7조에 실태조사, 안 제12조에서는 불법촬영 점검기기 대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본 조례안과 관련된 “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”는 서울시에서는 구로구, 양천구, 강북구 3개구에서, 전국적으로는 3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상위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안전

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합한 것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